실손의료비 보장(적립대체형) 무사고할인 특별약관

제1조(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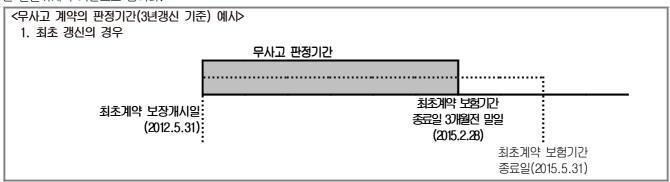
이 특별약관(이하 『특약』이라 합니다.)은 2011년 4월 1일 이후 갱신이 도래하는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이 부가된 보험계약(이하「실손의료 보험계약」이라 합니다)에 적용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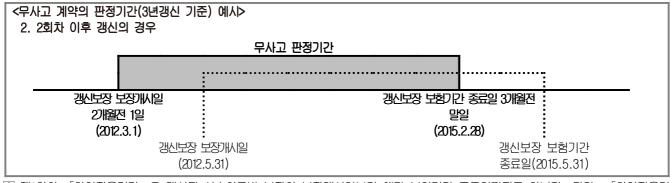
제2조(보험료 할인대상 및 보험료 할인)

① 회사는 각각의 실손의료비 보장이 일정기간(이하 「무사고 판정기간」이라 합니다)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고,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경우 「할인적용기간」 동안 매회 대체납입할 각각의 실손의료비 보장에 대한 보장보험료의 **10%**를 할인하여 드립니다. 다만, 보험료 할인대상 및 보험료 할인은 매 갱신시마다 재산정합니다.

<보험료 할인대상 예시>				
구 분		판정기간내 보험금 지급여부	갱신전후동일 보장내용여부	갱신보험료 할인여부
상해	입원의료비	-	동일	할인
	통원의료비	지급	_	X
질병	입원의료비	_	_	X
	통원의료비	지급	동일	Х
즈) 토워이르비이 경으 토워치르비 및 약제비 드O로 보자내요이 구부되 경으 가가 저요해 ICL 이와 오사하 경으도 간습니다.				

② 제1항의 「무사고 판정기간」이라 함은 갱신보장 보장개시일이 속한 달의 2개월전 1일부터 갱신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. 다만, 최초갱신의 경우 최초계약 보장개시일부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.





- ③ 제1항의 「할인적용기간」은 갱신된 실손의료비 보장의 보장개시일부터 해당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. 다만, 「할인적용기간」 내에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되는 날에 할인적용도 종료됩니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할인금액(각각의 실손의료비 보장에 대한 보장보험료의 10% 합계액)이 실손의료 보험계약의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예정사업비를 한도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.
- ⑤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할인금액을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.
- ⑥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보험업감독규정 부칙(2009.7.22)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「표준화 실손의료비 보장 유예계약 특별약관」을 적용받는 계약의 최초 갱신시에 한하여 제1항에서 정한 「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경우」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
제3조(준용규정)

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.